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개발

보호자 대상

2020.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본 자료는 연구자의 의견이며,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머릿말 ····· 4

■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소개 ····· 7

-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개발 배경과 목적 ····· 7
- 대상별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개발 ····· 10
-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의 구성 ····· 15

■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자료 ····· 17

- 개요 ····· 17
- 교육 자료 ····· 20
  - ○ 주제별 키워드 1. 유아의 존재론적 정의 ····· 20
  - ○ 주제별 키워드 2.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26
  - ○ 활동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 28
  - ○ 주제별 키워드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31
  - ○ 주제별 키워드 4. 아동인권친화환경 조성과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 보장 ····· 34
  - ○ 주제별 키워드 5.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 37
  - ○ 활동자료: 사례분석 ····· 41
  - ○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43

■ 참고문헌 ····· 44

■ 부록 자료 ····· 46

- 쉽게 쓴 아동권리협약 ····· 47

■ 머릿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현장 전반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개발 및 학생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인권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유아도 학생인권의 주체임을 명시한 학생인권 조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현장의 인권교육 자료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는 유아교육 현장에 제공되는 최초의 인권교육 자료로 만들어졌다. 교육청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였으므로 그 시작의 의의는 크나, 교육 형태와 구성이 기초적·제한적이라는 한계가 크다. 인권교육과 그 자료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높은 욕구를 반영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추후 서울시교육청은 추가적인 교육자료를 더 개발하여 인권교육 자료의 내실과 확장을 꾀할 계획이 있음을 알린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 7 호 '영유아기 아동의 아동권리 이행'은 영유아기 아동에게 아동권리를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기는 아동인권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은 "공교육과 사교육, 형식과 비형식, 비정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 훈련과 학습 등을 포함해야 한다(제 3 조)"고 언급하며, 아동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유아교육 현장에 영유아기 인권교육 자료가 만들어져 배포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아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교사, 부모, 종사자 등 의무이행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중요하다. 유치원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유아, 교사, 보호자, 종사자 등)의 인권 의식이 더불어 높아졌을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인권의 지식, 기술, 태도 모두 균형적으로 구성된 유아 및 성인 대상 인권교육이 제공되고, 지속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는 물론 교사, 보호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자료를 함께 개발하였다.

본 유아용 인권교육 자료는 교육의 주체인 유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성에 맞추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사 중심의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유아의 주도성과 능동성, 흥미를 교육의 목적에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유아 권리의 의미나 인권교육의 지향점과 매우 유사하며, 가르치기보다(teaching) 안내하고 촉진하는(facilitating)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유아의 보호권과 참여권이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두 차원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가지 권리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느끼는 유아 주도의 토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본 자료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통해 유아의 의견표현 및 참여의 권리를 증진하고 인권감수성 및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성인용 인권교육 자료는 현재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하는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소그룹 혹은 자가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동시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고 간편한 형태를 추구하고자 했다. 이때, 유아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구성원 모두를 중요히 여기고, 교사, 보호자,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유아인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본 자료의 특성이면서 인권교육의 특성이기도 한 인권의 지식, 기술, 태도를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카드 뉴스, 읽기 자료, 생각하기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자료는 단기교육 형태(2 시간)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교사를 비롯한 성인들은 스스로의 관점을 형성하고 성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반복적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사와 보호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해 유아를 둘러싼 인권친화환경이 조성되도록 전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호자 대상의 추가적인 교육자료 개발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자의 인권교육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즉, 교육공동체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치원 인권교육 체계화는 교육청의 주요한 과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는 유치원 현장에 제공되는 최초의 인권교육 자료로 만들어졌다. 교육청 차원의 첫 시도라 교육 형태와 구성에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치원 인권교육의 출발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해나가기를 바라며, 유치원의 구성원들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인권친화환경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의 효과적 자료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 교사, 보호자, 종사자 인권교육이 선행된 후, 유아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2. 유아, 성인용 모두 학습할 때마다 다르고 새로운 성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기를 권한다.
3. 유치원의의 전반적 환경이 인권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 실행자의 모두의 아동관과 교육철학에 인권적 관점이 연결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4. 모든 구성원 간(교사 간, 교사와 유아 간, 유아 간 등)의 상호작용에서 인권 존중 태도를 실천해야 하며, 특히 유아 인권교육 중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상호작용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본 인권교육자료를 토대로 유아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정과 유치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소개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개발 배경과 목적

유치원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또는 '조례')에 따라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하여, 유아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정책 주체로 현존한다(제2조). 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제29조)과 학생인권에 대한 홍보(제30조),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제31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며, 이때의 학생은 유치원 원아(유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2019년 실시된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와 보호자의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고 응답한 유치원 교사는 10.0%, 이름만 아는 경우는 57.9%였다. 아동권리협약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4.4%,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32.4%로서, 초·중·고등학교의 인식 수준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학생인권에 대한 각 근거 규범을 모른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아 보호자의 비율도 약 30%(학생권조례 33.5%, 아동권리협약 36.2%, 헌법 30.5%)에 달했으며, 나머지 보호자도 대부분 근거 규범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 그쳤다(학생인권조례 65.4%, 아동권리협약 62.6%, 헌법 68.3%). 유아 또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으며, 이러한 유아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전반이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유아 및 교사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유아를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보장제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전반에 유아의 인권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유아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유아기는 가정과 그 밖의 새로운 외부 환경에 처음 노출되는 아주 특별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자신과 주 양육자 간의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업에 집중하던 영아는 이후 또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즉, 아동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를 조율하면서 상호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다면적 원인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간다.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이러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며 구성되며, 이에 따라 '영유아기는 비차별과 인권감수성 형성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설명된다.

한편, 유아기는 권리를 인식하고 현실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보호자와 교사의 아동인권 옹호 역량은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유아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나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선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보호자, 유아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례는 이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와 낮은 민감도를 우려하게 한다.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적 준거인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취약한 집단, 가장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제4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약 제 42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아동인권교육은 아동의 발달 능력과 역량, 모든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고,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 개별 아동의 차이와 다양성 인정 등을 통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인식을 옹호하는 아동 중심적 권리교육을 지향한다.

유치원 원아와 함께 보호자, 교사에 대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부담한다(제21조의2 제1항). 2020년 1월에는 유치원 원아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한 유치원 교직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어(제21조의2 제2항),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도 다소간 진전이 있었다. 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치원장(원감) 대상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이 진행되었고,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용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인권교육은 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관리,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1조), 유아는 물론 아동 대상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관련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구별되며(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의 근거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제1조), 현행 유아교육 제도의 기본법으로 제시되는 「유아교육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울시 학생인권보장제도 전반에 유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태를 알 수 있다.

즉, 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대상 인권교육은 초등 연령 이상의 학생에 치우친 교육환경의 관점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의 인권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다. 본 유아 인권교육자료 개발연구는 유아의 인권 실현 및 아동인권 전반에 대한 서울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는 현장의 준비와 변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대상별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개발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전체 구성

유아 대상 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조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아동을 정의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2조는 '당사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1]. 이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유아 또한 아동으로서 동등한 인권을 갖는 인격체이며 인권교육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1] OHCHR.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에서 유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의 주체자이며, 영유아기는 권리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로서 당사국이 영유아기의 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전 세계적으로 유아기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3].

유아는 UN아동권리협약이 확인한 권리의 주체이다. 하지만 유아를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4]으로 인해 유아는 권리의 주체이기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5] 그러나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개념 형성, 타인과의 관계 형성, 삶을 향한 자세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과업들의 건강한 발달은 유아가 자신이 권리의 주체임을 알고 인권을 존중 및 실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6] 또한,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점차 타인의 생각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자신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권리 존중을 경험하는 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7].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은 유아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경험하고 배우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8],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은 단순히 교사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인권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의 경험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여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9].

본 유아용 인권교육 자료는 주요 권리 이슈를 선정하여 이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유아 중심의 토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 그림을 통해 유아들은 권리개념과 존중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사고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 실천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

2) OHCHR. (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CRC/C/GC/7/Rev.1).* Retrieved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7%2fRev.1&Lang=en

3) 장원주, 이화도 (2017). 유아인권교육관련 연구동향 분석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 **아동교육, 26**(2), 327-347.

4) 김정래 (1998).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미. **아동과 권리, 2**(2), 53-74.

5) 김선희, 윤재희 (2019). 인권교육 경험을 통한 유아 인권감수성의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161-188.

6) OHCHR. (2005). 앞 문서

7) 나정숙, 김경숙 (2020). 토의활동 중심 유아참여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9**(1), 125-142.

8) 구미향, 황소영 (2014a). 유아의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4**(6), 439-465.

9)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원장/감 대상 인권교육

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은 유아가 가족, 교육기관 및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서 따르는 유아 당사자의 도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에게 관련된 일상의 활동에서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아동권리 훈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 전문가 및 책임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또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지침인 일반논평 제5호 (General Comment No. 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는 '아동 및 성인이 협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기술하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1].

이와 같이 유아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인권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소양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2]. 특히 유아기는 보호자와 교사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사의 권리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13]. 그러므로 유아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의 실천, 태도, 가치 확립을 지향하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14]. 그러나 2020년 기준 유치원 교사의 직무 연수 과정에는 아동권리 교육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가 유아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접근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인권교육 기회는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본 교사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특성과 유치원 환경, 유아 교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 현장의 교육 훈련체계를 반영하여, 교육 시행이 용이하고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누리교육과정,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유아인권의 주요원칙과 기본 요소를 다루었다.

---

10) OHCHR. (2005). 앞 자료.

11) 이호균, 고유희, 김철홍, 장화정, 전미선, 조인섭, 황옥경 (2014).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과 권리, 18**(3). 387-409.

12) 김희영 (2015). 아디다스(ADIDAS) 교수모형을 적용한 인권교육 활동이 유아의 인권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183-210.

13) 구미향, 황소영 (2014b).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119-137.

14) 권귀염 (2015). 유아 인권교육을 위한 고민. **인문학논총**, **39**, 179-206.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과 안전의 영역에 있어서 유아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은 유아의 상황, 연령 및 개성에 적합한 모든 종사자가 유아기의 아동집단과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내 아동과 마주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16]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 아동과 가장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다. 태어난 후부터 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아동은 부모를 관찰하며, 부모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모델링 한다. 따라서 보호자의 행동이 인권을 기반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며,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은 지식을 쌓고, 지식 습득 과정에 인권 중심적인 태도와 기술을 형성하며, 인권을 보호·옹호하는 행동으로 발현되도록 기여한다.[17]

부모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양육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이 초·중·고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차별가해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이러한 존중 경험들은 유아기 때부터 경험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민주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이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18] 즉,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존중경험을 내재화하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은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권감수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동권리인식이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19]. 양육효능감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

15) OHCHR. (2005). 앞 자료.

16) 본 교육자료에서 '보호자'는 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의' 규정을 통해 보호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청 전반에서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구성된 가정환경을 배제하지 않기 위함이다.

17) OHCHR. (2019).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ourth phase (2020-202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HRC/42/23).* Retrieved from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9/227/36/PDF/G1922736.pdf?OpenElement

18) 이민주, 정익중, 양옥경, 배은경 (2018). 앞 논문

19) 현은주, 이보영 (2020). 부모의 인권감수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1), 775-788.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20]으로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 대상 인권교육 또는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확연히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우진경[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부모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본 연구는 한 편이었다. 2016년 기준 국민의 약 12.8%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22]한 결과도 있으며,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장혜진과 이현진의 연구[23]에서는 유아 부모의 40.4%만이 아동권리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비록 위 수치들은 모든 부모의 경우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부모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보호자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의 모든 보호자가 어렵거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의 긍정적 경험을 누적하고, 유치원 내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며, 보호자 대상 유아 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21) 우진경 (2020). 아동권리 관련 연구 동향분석: 부모 및 가정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161-187.
22) 숫자로 보는 인권 (2018). **국민의 인권교육 경험**. http://humanrightsdb.com/1-3-1-f/에서 2020년 7월 27일 인출.
23) 장혜진, 이현진 (2018). 아동권리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 변인별 참여 양상.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165-182.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의 구성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는 유치원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아용은 네 가지 권리 이슈에 대한 유아 주도의 토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용은 인권의 맥락을 함께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게 공통 읽기자료를 제공하며, 각기 다른 인권 존중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사례, 활동, 질문지 및 추가 읽기자료를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유아 대상]

- **회기:** 4회기(회기별 20분)
- **구성:** 토의 활동, 권리상자(12개 권리조항)
- **주요 내용:** 4가지 권리 이슈
  - ○ 권리개념
  - ○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 ○ 권리주체적 역할로서 권리 침해 시 도움 요청
- **교육 방법:** 소그룹 유아 주도의 토의, 담임교사와 함께 진행

[성인 대상]

- **주제**
  - ○ 교사·원장/감 : 4가지 주제(주제별 약 30분~1시간)
  - ○ 보호자 : 5가지 주제(주제별 약 30분)
  - ○ 일반 종사자(조리사 등) : 5가지 주제(주제별 약 30분)
- **구성**
  - ○ **공통구성:** 카드뉴스, 공통 읽기자료, 공통 활동
  - ○ **대상별 추가 구성:** 대상별 읽기자료, 대상별 사례, 활동, 체크리스트
- **주요 내용**
  - ○ **공통주제**: 유아와 유아기, 유아의 발달특성,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최상이익의 원칙,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 ○ **대상별 주제**
    - 교사·원장/감: 유아의 목소리
    - 보호자: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 일반 종사자: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
- **교육 방법:** 소그룹 토의 또는 자기주도학습

[전체 구성표]

	보호자	종사자	교사 · 원장/감	유아
목적	모든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유치원의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목표	유아인권감수성 향상 및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실천 • 유아와 보호자의 존재론적 정의 •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및 적용 •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이해 및 훈련	유아인권감수성 향상 및 아동인권친화환경 조성 • 유아에 대한 이해 • 유아인권에 대한 이해 •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 • 아동친화환경(지역사회)	유아인권감수성 향상 및 유아인권에 기반한 교육 및 교실 운영 실천 • 유아 및 유아 인권에 대한 이해 • 유아기 발달적 특성에 따른 유아인권 적용 이해 및 훈련 • 유치원 내 아동친화적인 교실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	유아의 권리 개념 인식 및 존중 실천 역량 증진 • 유아인권 이슈 이해 • 권리 존중 실천 역량 훈련 • 적절한 권리주체적 역할 도모
구성	5가지 주제 주제별 약 30분 ※ 학습방법에 따라 주제별 소요시간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주제별로 선택 활용 가능	5가지 주제 주제별 약 30분 ※ 학습방법에 따라 주제별 소요시간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주제별로 선택 활용 가능	4가지 주제 주제별 약 30분 ~ 1시간 ※ 학습방법에 따라 주제별 소요시간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주제별로 선택 활용 가능	4회기 회기별 20분
	• 카드뉴스 • 읽기자료 • 활동자료 • 유아인권기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 카드뉴스 • 읽기자료 • 활동자료 • 유아인권기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종사자용)	• 카드뉴스 • 읽기자료 • 활동자료 • 유아인권기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교사· 원장/감용)	• 4가지 권리 이슈를 다루는 회기 • 권리상자: 유아용 권리조항카드
방법	모둠 교육/훈련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모둠 교육/훈련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	토의 활동
내용	• 유아의 존재론적 정의 •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아동친화환경조성과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 보장 •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 유아와 유아기 • 유아의 발달 특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아동친화환경조성과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 보장	• 유아인권교육 • 유아의 발달 특성 • 유아의 목소리 •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 1회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해요 • 2회기 어린이는 공평하게, 안전하게 대해야 해요 • 3회기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해요 • 4회기 어린이 권리가 존중되지 못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자료

[개요]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자료

A. 목적 :

- 유아인권감수성 향상 및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실천

* 보호자: 부모, 조부모 등 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포함한 보호자 모두를 지칭

B. 목표 :

- 유아와 보호자의 존재론적 정의
-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및 적용
- 유아인권에 기반 한 자녀양육 이해 및 훈련

C. 학습방법(모둠 교육/훈련 혹은 자기주도학습)

- 교육 주제 : 5가지
- 교육 시간 : 주제별 약 30분
- 활용 방법 : 소그룹 토의 또는 자기주도학습

※ 보호자 대상 교육은 유치원에서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교사가 진행하는 참여자 모둠활동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최선이나, 본 교육자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둠활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되었다.

※ 이에 보호자 각자가 개발된 자료(카드뉴스/읽기자료/활동자료 등)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유아인권 기반 양육을 깨우치고 체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D. 교육자료 구성

카드뉴스 (주제 별 핵심내용)	⇒	읽기자료 (주제 별 읽기자료)	⇒	활동자료 (유아인권 이해 및 양육 실천)	⇒	체크리스트 (자기점검)

1) 카드뉴스

: 유아인권 키워드의 주요 핵심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종사자 대상 주제 별 키워드>

(1) 유아의 존재론적 정의
(2)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4) 아동인권친화환경 조성과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 보장
(5)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2) 읽기자료(A4 1~2페이지)

: 카드뉴스에 담긴 교육내용에 더불어 주제별 "읽기 자료"를 제공합니다.읽기 자료는 주제 별 정보 및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말미에 간단한 질문지를 포함하여 유아인권 관련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생각해보기'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3) 활동자료

: 읽기 자료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지식이 아동친화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활동자료를 제공합니다. 활동을 통하여 유아인권 관련 정보와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직접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돕습니다.

4) 유아인권기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 모둠활동을 통해서, 혹은 개별적인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유아기 자녀 및 유아를 양육·보호하는 보호자가 아동인권 기반 양육을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정보, 적용기술, 유아기 자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아동관 및 인권감수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자료]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자료

▶ 주제별 키워드 1. 유아의 존재론적 정의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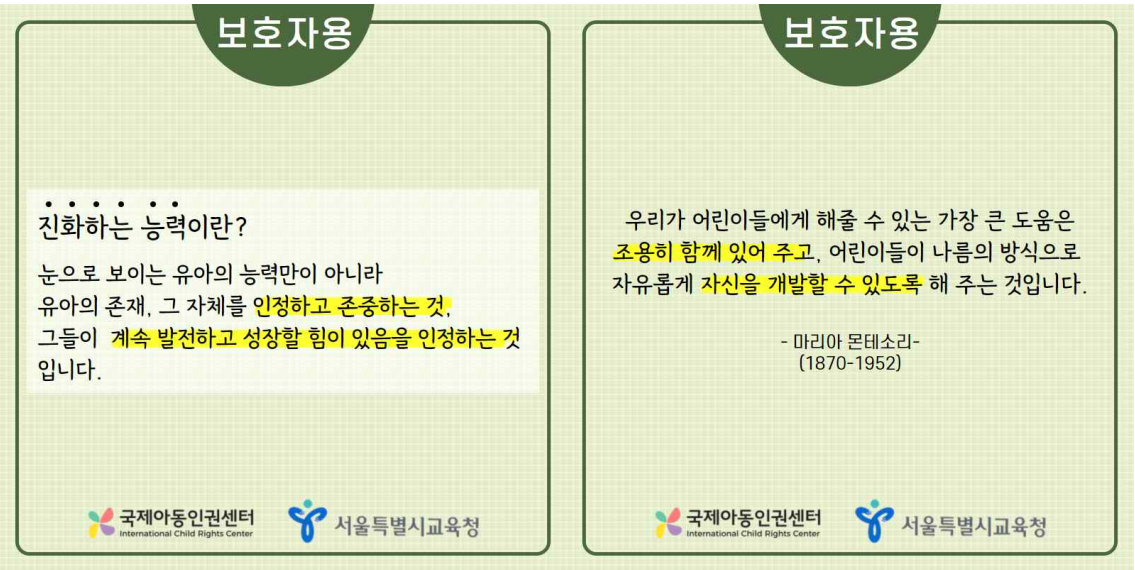
보호자용
진화하는 능력이란?
눈으로 보이는 유아의 능력만이 아니라
유아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들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조용히 함께 있어 주고, 어린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 마리아 몬테소리-
(1870-1952)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읽기자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만 18세까지의 사람을 '아동"이라 정의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출생 이후 만 18세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아동기"라고 한다.

아동기를 사는 아동 중 만 3세-5세 기간을 사는 아동을 유아라고 부른다. 유아기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나, 부모를 포함한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하는 전제조건은 아동관에 대한 성찰이다. 교사, 종사자, 그리고 보호자는 유아를 존재론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묻고 답해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아는 수동적이고, 미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 어른의 생각에 따르는 존재로 생각했다. 또한, 유아는 힘없고 작은 사람으로서,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다.

레바논의 철학자 칼릴지브란(1883-1931)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아이들이란 당신들을 거쳐 왔을 뿐 당신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라 말한다. 그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지녀야 할 "아동관"의 본질을 제시한다.

폴란드의 의학자이며 철학자, 교육자이며 아동인권 옹호의 선구자인 야누스 코르착(1877-1942)은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다.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받고 존중받은 아이들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우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아동인권을 알아야 할 이유를 상기한다.

오늘날 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유아는 태어난 즉시 인간으로서 모든 기본권을 향유하며, 이러한 권리 향유는 유아의 진화하는 능력(Evoling Capacity)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1859-1952)는 아동의 특성 중 "미숙함"을 다른 학자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리한다. 그는 아동의 미성숙은 부족함이나 결핍(lack)이 아닌 "성장하는 힘(Power to Grow)"이라고 하였다. 아동은 결코 미숙하거나 힘없는 존재가 아니며,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 희망, 욕구가 없는 부족한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학자달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 5조에서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을 명시하였다. 전인격적 발달단계에 있

는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은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현하는 핵심이다.

이탈리아의 여의사이며 교육학자인 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 역시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녀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아동은 어떤 존재이며, 아동을 어떻게 대하여야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통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능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아동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는 산만해서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늘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면서, 아동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아이들 내면의 집중력을 인식하였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아동의 능력은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조). 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자기만의 관심과 욕구를 지닌 우주에 단 하나인 유일무이한 존재다. 아동은 그 누구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잇음을 기억해야 한다.

▶ 주제별 키워드 2. 유아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카드뉴스]

보호자용
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4개의 일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4개의 일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의 원칙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여러 법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넘어 유치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읽기자료]

사람들은 아직 말도 못 하는 영아(0세-만2세)나 제대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만3세-5세)에게도 인권이 있는지 묻는다. 특히 유아기 아동에게 아동인권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있는지 묻는다. 당연히 답은 "그렇다"이다. 유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지니며, 그 존엄성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포괄적인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다. 그중에서도 참여와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협약 12조),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협약 31조), 교육받을 권리(협약 5, 28, 29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협약 2, 6조),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협약 19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7조) 등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다.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합의 문서로, 아동을 인권의 적극적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조약이며,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196개 나라가 협약 비준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4개의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성되며, 협약이 천명한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4개의 기본원칙 -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의견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담고 있다.

[활동자료]

< 유엔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 >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다. 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으로 아동을 인권의 적극적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정의하며, 이는 유아 또한 아동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래의 조항은 유아와 관련된 일에 고려되어야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입니다. 원칙의 의미를 살펴보고, 유치원 내에서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사례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작성해주세요.

1. 비차별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이나 그 부모 및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

유아는 어떠한 근거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보호자에 대한 차별이 곧 유아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차별을 감독하고 이에 맞설 책임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 내에서 비차별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 사례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작성해주세요.

2. 유아 최상의 이익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과정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과정이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과 사법적, 행정적 절차까지 포함한다.

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유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과 정책 개발, 행정적·사법적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 또한 유아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가정 내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 사례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작성해주세요.

3.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당사국은 생명, 생존과 발달을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생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유아의 권리 보장은 총체적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책임 존중 및 지원, 양적 서비스 제공, 적절한 영양,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수준, 교육과 놀이 등 협약의 모든 조항이 이행될 때, 유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 내에서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 사례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작성해주세요.

---

4.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까지도 포함된다.

유아는 권리주체자로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유아의 의견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일상에서 유아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여야 하며, 성인은 유아의 이익, 이해의 정도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심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유아는 구어 혹은 문자화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 생각, 희망을 전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언어적인 형태의 표출되는 유아의 의사소통과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가정 내에서 아동(자녀)의 의견표명 존중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 사례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작성해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본 자료에 첨부된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2개 조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일반논평 7.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 등 자세한 내용은 www.incrc.org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제별 키워드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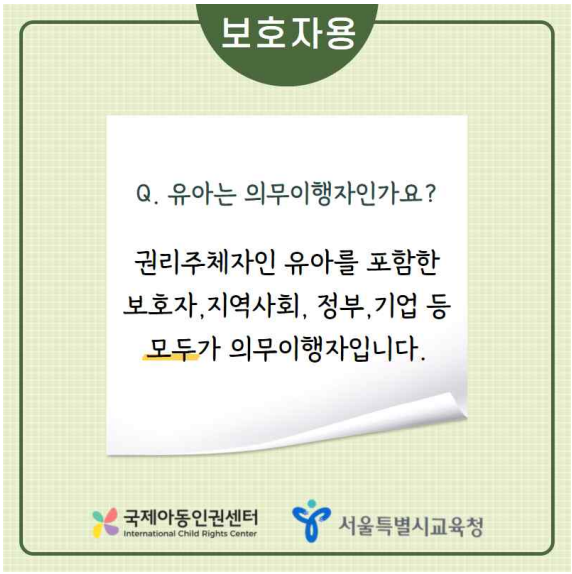
보호자용
Q. 유아는 의무이행자인가요?
권리주체자인 유아를 포함한
보호자,지역사회, 정부,기업 등
모두가 의무이행자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읽기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협약을 비준한 196개 국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따른 권고를 당사국에 제시한다.

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간의 선순환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권리의 실천은 권리의 배제와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향유를 위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자(duty-bearer)"란 유아의 권리보호와 협약 이행 과정에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아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행자를 "국가"로 명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장과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뒷받침할 역할을 확인하였다. 권리주체자인 유아를 포함한 가족, 지역주민, 언론인과 기업 종사자, 교사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권리주체자이며 동시에 의무이행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가 권리주체자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엄성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상호존중하는 의무이행자의 역할 또한 습득하게 될 것이다. 즉,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 마주하는 의무이행자인 성인들의 역할 수행을 모델링한다. 유아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성인의 모습과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며, 아동은 물론 성인이 권리 존중을 통해 인격적 삶을 보장받아야 할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유아인권 보장은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유아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 주제별 키워드 4. 아동인권친화환경 조성과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 보장

[카드뉴스]

보호자용

아동친화환경이란?

아동친화환경은 아동의 독립적인 삶의 형태가 존중되며,
이를 위한 사회 공동의 책임이 이행되는 제반환경,
모든 아동의 천부적 인권이 존중 보호 실현되고
그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발달 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법적기준 균형 도덕적기준

기본권 보장
아동인권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아동권리 준수

상호존중, 상호이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유아의 존엄성 존중
▶ 교사의 존엄성/전문성 존중
▶ 보호자의 존엄성 존중
▶ 종사자 존엄성 존중

유아의 안전, 건강, 행복을 보장하는 환경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속담 중 -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유치원, 지역사회 등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모두가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는 곳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인터뷰 중)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보호자용

아동친화적 환경이 조성 될 때,
그 안에서 놀고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읽기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명시한 것은 협약의 백미로 평가된다. 아동최상의 이익을 실천하는 것이 아동인권 증진에 핵심이 된다는 뜻이다. 유아인권의 절대적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을 중심에 두고 국가, 보호자, 교사(전문가)가 파트너십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과정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인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동인권이 이루어지는 제반 환경이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아동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친화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는 법적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기준이다. 법적 기준은 아동인권의 준거라 말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협약의 기본권과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윤리적인 기준을 내재화하여,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상호존중의 삶을 사는 것도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는 한 축이다.

유치원에서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인권친화적인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모든 심리적·정서적·지적 교육환경이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를 중심에 두고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을 유아와 함께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을 조력하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유아의 존재론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종사자, 보호자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유아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의 목적은 그 속에서 놀고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아기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 주제별 키워드 5.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카드뉴스]

보호자용
정보 주기와 안내하기
- 아이에게 명확한 행동지침 주기
- 행동지침에 대한 설명하기
-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격려하기
- 긍정적 지지
- 아이와 함께 생각 나누기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서울특별시교육청

[읽기자료]

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가 아동인권기반 양육을 실천하려면 올바른 아동관 정립이 필수적이다. 유아기를 사는 자녀가 존재론적으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유아인권의 국제적 준거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밝히는 유아권리의 개별 내용을 숙지하고, 유아의 모든 인권 중에서도 특별히 유아기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권리 보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폭력은 아동인권기반 양육의 핵심이다. 2006년 9월 발표된 유엔아동폭력보고서는 "아동에게 가하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 폭력은 반드시 예방되어야 하며 예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를 수단으로 하지 않는, 상호동등한 당사자로서 소통하는 과정도 아동인권기반 양육의 주요 내용이다. 문제해결 방식이 아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통찰과 이해, 충분한 지식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을 내재화 한 보호자는 아이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 규칙에 대한 이해, 일관된 소통능력, 자신감 증진, 배움과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 타인의 권리 존중, 예의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은 단기적 반응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내재화해 가는 긍정적인 아동양육의 접근방법이다.

분노조절과 따뜻함 주기

보호자는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학습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이의 학습을 저해한다. 보호자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보호자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할 때, 먼저 아이를 안아주는 것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따뜻함 주기의 한 방법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같이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읽는 등 아이에게 무언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따뜻함 제공이다.

유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지만, 보호자나 교사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한다. 아동인권기반 양육이란 바로 아동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고 이

해하며 아이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따뜻한 환경을 만들고 지지해주고 정보를 주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거칠게 행동한 때라면, 실수를 지적하고 훈계하기 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해야 한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호자는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며,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행동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안내자이다. 또한, 보호자는 아이의 삶의 동반자이자 차별 없이 아이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삶의 동역자이다. 아이의 동반자이자 동역자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이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의 전과정을 통해 따듯함과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의 양육이다. 유아는 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잘 배운다. 따뜻함(지지)과 정보(안내)는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의 기본 요소이다.

[활동자료]

< 사례 분석 >

아래 사례를 읽고 제시된 5개의 질문을 통해 아동인권에 기반 한 양육에 대한 생각 나누기

<사례>

우리 부부는 초등하고 6학년 딸 선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준이를 키운다. 나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남편은 일용직이다. 선이는 성격이 다부지고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해결하고 때로는 우리 부부를 돕기도 한다. 6살 아들 준이는 친구를 좋아하고 노는 걸 무척 즐긴다. 우리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 삶이 분주해서 준이와 많이 놀아주지 못한다. 준이는 늘 친구 집에서 놀다 온다. 가끔 친구와 놀다가 싸워서 얼굴이나 팔에 상처가 생겨서 들어오기도 한다. 엄마로서 안쓰러운 마음에 준이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싸우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하면, 준이는 웃으면서 "난 괜찮은데. 나 안 아파!"라 한다. 어느 날 준이가 집에 왔는데 눈이 퍼렇게 멍들고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다.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놀다가 싸웠어. 친구가 나를 막 때렸는데, 옆에 있던 누나도 함께 나를 때렸어."라 한다. 기가 막혀서 친구 누나까지 때릴 때 준이는 뭘 했느냐고 물었다. 가만히 있었단다. 그래서 큰소리로 "아니 친구 누나까지 널 때리는데 가만있었어?"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 묻는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너도 때려야지" 소리 질렀다.

준이는 말했다. "그럼 우린 언제 놀아? 친구가 때리면 나도 친구 때리고, 친구 누나가 때리면 나도 누나 때리고, 계속 서로 때리기만 하면, 우린 언제 놀아?" 한다. 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왜 우리 준이는 늘 맞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사례를 읽고 아래 5개의 질문으로 사례 분석하기

1) 사례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세요.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상적 이유/근원적 이유 규명하기)

3)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목표는?

4) 사례 속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은 무엇인가?

5) 당신의 자녀를 위한 장기적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점검]

유아인권기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보호자가 아이를 대할 때 자신의 태도, 행동을 성찰하며,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24)]

		YES	NO
1	우리 아이는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안전과 안정감을 느낀다.	□	□
2	아이의 특성(성별, 경제적, 문화적 차이, 장애,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3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결정할 때, 아이의 생각과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려고 한다.	□	□
4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듣는다.	□	□
5	아이의 발달적 특성과 진화하는 능력을 믿으며 이해하고 기다린다.	□	□
6	아이가 부당함을 느낄 때, 이야기 하고 서로 도와 줄 수 있다.	□	□
7	아이의 감정과 기분을 무시·모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한다.	□	□
8	아이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 정보를 제공해준다.	□	□
9	아이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10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가족, 유치원, 지역사회)을 서로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	□

24) D. Shiman & K. Rudelius-Palmer, Economic and Social Justice: A Human Rights Perspective(Minneapolis: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1999)의 일부 문항을 바탕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맞춰 재구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아동인권센터. (2013). **존중과 소통,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구미향, 황소영 (2014a). 유아의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4**(6), 439-465.

구미향, 황소영 (2014b).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119-137.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2016).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vol.2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9). CLAP 세상의 모든 아동과 조력자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북

권귀염 (2015). 유아 인권교육을 위한 고민. **인문학논총**, **39**, 179-206.

김선희, 윤재희 (2019). 인권교육 경험을 통한 유아 인권감수성의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161-188.

김인숙, 정병수(2015).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요!** 서울: 국민북스.

김정래 (1998).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미. **아동과 권리, 2**(2), 53-74.

김종곤 (2020). 차별과 혐오의 뿌리: 부모의 존중이 포용적 사고를 통하여 청소년의 차별 가해 행위감소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6), 397-418.

김희영 (2015). 아디다스(ADIDAS) 교수모형을 적용한 인권교육 활동이 유아의 인권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183-210.

나정숙, 김경숙 (2020). 토의활동 중심 유아참여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9**(1), 125-142.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8).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특별시 (2020). **투닥투닥 시끌벅적 지민이네 교실**.

서울특별시,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2015년 어린이 · 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 컨설팅**.

서울특별시,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2019 어린이 · 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 컨설팅**.

숫자로 보는 인권 (2018). **국민의 인권교육 경험**. http://humanrightsdb.com/1-3-1-f/에서 2020년 7월 27일 인출.

우진경 (2020). 아동권리 관련 연구 동향분석: 부모 및 가정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161-187.

이민주, 정익중, 양옥경, 배은경 (2018).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2**, 263-286.

이양희 (2004).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서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이호균, 고유희, 김철홍, 장화정, 전미선, 조인섭, 황옥경 (2014).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과 권리, 18**(3). 387-409.

장원주, 이화도 (2017). 유아인권교육관련 연구동향 분석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 **아동교육, 26**(2), 327-347.

장혜진, 이현진 (2018). 아동권리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 변인별 참여 양상.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165-18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아동인권센터 (20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현은주, 이보영 (2020). 부모의 인권감수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1), 775-788.

Shiman, D. & Rudelius-Palmer, K. (1999). *Economic and social justice: A human rights perspective.* Minneapolis: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Retrieved from http://www.hrusa.org/hrmaterials/temperature/tempprint.htm

Durrant, J. E. (2007). **긍정적인 훈육** (세이브더칠드런, 역). 서울: 세이프더칠드런 코리아.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OHCHR.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OHCHR. (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CRC/C/GC/7/Rev.1).* Retrieved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7%2fRev.1&Lang=en

OHCHR. (2019).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ourth phase (2020-202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HRC/42/23)*. Retrieved from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9/227/36/PDF/G1922736.pdf?OpenElement

부록 자료

쉽게 풀어 쓴 아동권리협약

번역 및 요약 : 국제아동인권센터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 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5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6조.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제39조.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

▣ 기획

윤여복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미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정성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전명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전문관

▣ 책임연구원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 공동연구원

김인숙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장) 황소영 (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외래교수)
김나영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 이미연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이정란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장은혜 (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 연구보조원

이하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 자문 및 감수

김호현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정화 (서울동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감)
윤수향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용 인권교육 자료 개발

보호자 대상

발 행 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저 작 권 | 서울특별시교육청